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차 해 영 의원)

의안 번호	25-150
----------	--------

발의년월일: 2025. 11. .

발의자: 차해영,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영준, 장정희, 최은하

1. 개정이유

상위 지침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마포구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위법 개정 시행(2025.10.23.)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목적 정비 및 명칭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 제5조, 제9조)

3. 관계법령

-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5조의2
- 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2025. 11. 7. ~ 11. 12.
-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의 설치”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한다.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
4.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1항 중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를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으로, “이상 두어야”를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마포구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u> <u>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u> <u>조례</u>	<u>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 설치</u> <u>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강가정기본법</u>」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하는 <u>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u>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건강가정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 ----- ----- ----- ----- <u>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센터의 설치</u>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u>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신 설>

5. (생 략)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생 략)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

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 가족센터-----.

제3조(기능) ① -----.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

<삭 제>

4.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현행 제5호와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 ① ----- 「건강가정

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생략)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

제9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협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3.] [성평등가족부령 제3호, 2025. 10. 23., 일부개정]

제6조(가정 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

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으자를 선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정책과 박완정
연 락 처	02-3153-8933